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은하방문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급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1. 계약 목적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이 익숙한 가정 내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안정과 보호자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용 대상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

3. 급여 범위

장기요양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함하며,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제공됩니다.

- 방문요양: 신체·가사·인지활동 지원
- 방문목욕: 장비를 이용한 가정 내 목욕 지원

4. 이용계약 절차

서비스 시작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 간 서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 계약 기간 및 급여 종류
-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안내
-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 동의
- 배상 책임 및 계약 해지 조건 등

5. 계약 해지 사유

계약은 아래의 경우 종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사망 또는 장기요양등급 자격 상실
- 감염병 관리 등 보건안전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장기 외출, 요양시설 입소 등 사유 발생 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서비스 방해 또는 이용료 장기 연체 시

6. 이용요금 및 본인부담금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방문요양급여비용수가)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2,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구 분	금액 (원)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 (원)	본인부담금 정하지 아니한다.		
		일반 (15%)	경감 (40%)	경감 (60%)			일반 (15%)	경감 (40%)	경감 (60%)
30분 이상	16,940	2,540	1,520	1,010	150분 이상	49,160	7,370	4,420	2,940
60분 이상	24,580	3,680	2,210	1,470	180분 이상	55,350	8,300	4,980	3,320
90분 이상	33,120	4,960	2,980	1,980	210분 이상	61,670	9,250	5,550	3,700
120분 이상	42,160	6,320	3,790	2,520	240분 이상	68,030	10,200	6,120	4,080

6.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1)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 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기준)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 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40%	60%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12,972	7,783	5,189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11,696	7,017	4,678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7,304	4,382	2,921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기초수급자-무료/ 의료수급자, 차상위, 경감-7.5%)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1)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①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②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 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이동 목욕용”으로 표기되어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이동 목욕용”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욕조, 펌프, 호스 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

7.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역할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권리:

-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수급자 상태에 대한 확인
- 수급자에게 불이익 발생 시 시정 요청
- 서비스 계획 수립 시 협의 참여

의무:

-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 필요 시 대리인 지정 등 서비스 협조

8. 기타 안내

-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 계약서는 수급자와 센터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계약 전 또는 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은하방문요양센터
대표번호: 031-362-6623